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6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10

I. 개요

1. 한정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1.
-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2025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 2024년 기준 42%(매년 0.5%p씩 인하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인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현행	한정애의원안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1천분의 1천350-----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② (생략)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	③ ----- ----- -----

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90</u>으로 한다. ⑤ (생 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 례) 2008년부터 <u>2027년</u>까지 각 연 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 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7. (생 략) <u>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u> <u>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u> <u>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u>	-----<u>1천분의</u> <u>65</u>-----. ④ ----- ----- ----- ----- -----<u>1천분의 130</u>-----.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 례) -----<u>2024년</u>----- ----- ----- ----- ----- -----. 1. ~ 17.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 025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별 사 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 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

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475
2. 2026년은 1만분의 500
3. 2027년은 1만분의 525
4. 2028년은 1만분의 550
5. 2029년은 1만분의 575
6. 2030년은 1만분의 600
7. 2031년은 1만분의 625

② 2025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95
2. 2026년은 1천분의 100
3. 2027년은 1천분의 105
4. 2028년은 1천분의 110
5. 2029년은 1천분의 115
6. 2030년은 1천분의 120
7. 2031년은 1천분의 125

나. 검토의견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¹⁾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임.
- **명목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생애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같은 가입자(평균소득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때 수급하게 되는 기본연금액이 그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24년 현재 42%이나, 향후 4년간 매년 0.5%p씩 하향 조정되어 2028년부터 40%로 적용될 예정임.²⁾

< 명목소득대체율 산식 >

[용어 정의³⁾]

- **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 **B값**: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
- **법정계수**: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곱하도록 본문에 규정된 계수(현행법: 1천분의 1천200) ⇒ 개정 대상
- **n값**: 가입기간 중 20년을 초과한 부분(年 단위)

- 1)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2024년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명목소득대체율의 계산] ※ 가정: ① A=B ② 40년간 가입(n=20)

$$\circ \text{명목소득대체율}(\%) = \frac{(A+B) \times \text{법정계수}}{12B} \times \left(1 + \frac{50}{1,000} \times n\right) \times 100(\%)$$

○ A = B, n = 20(40년간 가입), 법정계수에 '1천분의 1천200'을 각각 산식에 대입하면,

$$\text{명목소득대체율}(\%) = \frac{2B \times 1.2}{12B} \times \left(1 + \frac{50}{1,000} \times 20\right) \times 100(\%) = 40 \text{이 도출됨.}$$

□ 그런데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측면이 있음.

< 제5차 재정계산(2023) 주요 결과 >

구분	추계기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적립기금 규모)
제5차 재정계산 (2023년)	2023년 ~ 2093년	1,755조원 (2040년)	2041년	2055년 (△47조원)
제4차 재정계산 (2018년)	2018년 ~ 2088년	1,778조원 (2041년)	2042년	2057년 (△124조원)
제3차 재정계산 (2013년)	2013년 ~ 2083년	2,561조원 (2043년)	2044년	2060년 (△281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3)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2024년 3월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64만 7천원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비율은 약 68.1%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노령연금 수급액별 수급권자 현황 >

(단위: 명, %)

계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563,434	590,941	2,044,576	1,152,572	638,720	371,298	351,801	211,771	165,657	36,098
(100)	(10.6)	(36.8)	(20.7)	(11.5)	(6.7)	(6.3)	(3.8)	(3.0)	(0.6)

주: 2024년 3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2년부터 13%가 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2024년 현재 42%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점진적 인하 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2025년부터 45%가 적용되도록 일시에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은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보험료율만 9%에서 12%로 인상하는 대안(2안)보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대안(1안)을 더 많이 선택하였음.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2024) 설문조사 결과 >

구분	1안	2안	잘 모르겠다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인상	현행 9%에서 12%로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50%로 인상	현행 40% 유지	-
설문조사 결과	56.0%	42.6%	1.3%

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임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은 각각 4년과 6년 늦추어진 2045년과 2061년으로 전망됨.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명목소득대체율이 일시에 인상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기존 계산법에 따라 산정되므로, 현재 시점의 수급권자에게까지 그 효과가 소급하여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개정하려는 부칙이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이 아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이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공감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결정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에서 인상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을 기존(2055년)보다 8년⁴⁾ 미루는 효과만 있을 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개혁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더라도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보험료율이 낮은 수준⁵⁾이므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율이 13%보다 높아지는 경우에 검토 가능하며,
-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노후소득보장성,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중검토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4) 각 기관별 모형에 따라 전제하는 가정이 서로 달라 기금 소진 시점에 대한 추계는 다를 수 있음.

5) 독일(18.6%), 일본(18.3%), 스웨덴(16%), 프랑스(15.45%) 등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23.)

소득대체율 인상은 근본적 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에도 이를 부담하는 기업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담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신중검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등 급여 수준을 적정화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참고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주관 연금개혁 공론화: 모수개혁안 관련

추진배경	○ 제21대 국회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설치·구성함('22. 7월) ○ 연금특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히 청취하기 위하여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함('22. 11월) ○ 또한, 연금개혁의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음('23. 1월)
추진경과	○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23. 11월),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입찰 등 절차 추진 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킴('24. 1월) *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복수의 모수개혁안을 제안하였음 -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 -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 ○ 공론화위원회는 1단계 숙의로 36인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실시하였고('24. 3월), 여기에서 2단계 숙의에 부칠 대안**을 개발하였음 ** 의제숙의단은 민간자문위원회안을 참고하되, 현실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2개 대안을 개발하였음 - (1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 - (2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 ○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로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약 4주간의 학습·토론·숙의를 거친 시민대표단이 최종 조사에 참여하였음('24. 4월)
조사결과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시민대표단은 1안(56.0%)을 2안(42.6%)보다 약 13.4%p 더 많이 지지하였음(오차범위 밖)